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. 7. 5 선고 2021가단176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

변 론 종 결 2022. 6. 21.

판 결 선 고 2022. 7. 5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토지 170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토지 195.3㎡를 인도하라.
3.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토지 91.8㎡를 인도하라.
4.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건축물(별지6-2 건물개황도의 ‘ㄱ’ 부분, 별지6-3 건물개황도의 ‘ㄴ’ 부분)을 철거하고, 토지 588㎡를 인도하라.
5. 피고 B은 원고에게 63,674원 및 2021. 11. 13.부터 위 제1, 2항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,67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6.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은 원고에게 16,983원 및 2021. 11. 13.부터 위 제3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,9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7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,440원 및 2021. 11. 13.부터 위 제4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6,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8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9. 제1 내지 7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함철환

별지